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9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김소희 · 성일종 · 박준태

김상훈 · 조승환 · 유용원

서일준 · 최수진 · 김미애

신성범 · 강승규 · 김은혜

서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주된 업종 변경 가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생략)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⑥ ~ ⑩ (생략)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